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343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3437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1547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최찬실

피고, 항소인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변론 종결2022. 10. 26.

판결 선고2022. 11. 23.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1547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809/13884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667/23802 지분,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6702/66645 지분,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809/1388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3229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667/2380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32291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6702/666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32293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3229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나.항 기재와 같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마지막에 '한편 원고들 매수 부동산 중 원고들 명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2014. 9. 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해 10. 28.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의 원고 C, D 부분 중 각 '8/3,705'를 각 '5/3,70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7, 12, 20행의 각 '4'를 각 '8'로, 제10행의 '12,115m²'를 '8,387m²'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이 사건'부터 제12행의 '되었다)'까지 부분을 '이 사건 3 내지 7 부동산(당시 AA 임야 66,645m²였다가 이후 분할로 47,934m²로 되었으며, 2020. 9. 25. 이 사건 3 내지 7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제2항'을 '제3의 나항'으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1 부동산' 다음에 '중 10809/13884 지분'을, 제18행의 '2 부동산' 다음에 '중 17667/23802 지분'을 각 추가하고, 제19행의 '3'을 '3 내지 7'로 고쳐 쓰고, '부동산' 다음에 '중 각 36702/66645 지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같다'를 '같고, 그 외 AC 임야 1,968m² 중 443/2096지분이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인정 근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1,070,496,706원'을 '1,070,467,706원'으로 고쳐 쓰고, '이른다' 다음에 '(위 AC 임야를 고려하더라도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8행의 '어렵다' 다음에 '(가사 F의 적극재산으로 된다고 보아 원고들 매수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의 '있으나,' 다음에 '한편 위 각 증거들과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3년부터

계속하여 F에 대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 왔고, F의 대표자인 P는 2013. 6. 13.과 2014. 9. 15. 원고 B, C 등에 대하여 허가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과 계약금의 배액, 등기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2018. 3.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각 작성하여 준 점, 원고들은 2018. 7.경 P를 형사 고소하고, F와 P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 체결된 점, 피고 등이 17억 원 중 1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도 수익의 60%를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주장의 사업약정 내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등이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2018. 2. 1.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마쳐진 점,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F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당시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법인 계좌와 P의 처인 AD 명의의 계좌를 함께 이용하였는데, F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거나 피고에게 수익을 배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P도 분양대금 수령 등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 사업약정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는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취지 정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박남천

판사박태안

별지

1)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분할 등에 따른 부동산을 특정하고,

지분의 오기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 전후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